##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846

발의연월일: 2021. 6. 17.

발 의 자: 박완수 · 김성원 · 태영호

조경태 · 한무경 · 박형수

강기윤 · 김태호 · 이종배

하영제 · 최형두 의원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재개발 현장에서 건축물 해체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대상 건축물이 붕괴되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이 사고는 근본적으로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과 관련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현행 제30조의2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 해체 현장에 현장점검을 실 시하거나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은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법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건 축물 해체 현장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거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차량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한시적으로 우회로 확보, 통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 법률 제 호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진흥 등"을 "진흥, 안전대책 등"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 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물"로, "할 수 있다"를 "실시하거나 현장점검 업무를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로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허가권자는 제1항에"를 "제1항에"로, "대행하게 한경우"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점검 결과를"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를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 ② 허가권자는 해체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 차량에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우회로 확보, 통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 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① -----는 건축물관리기술의 향상과 관련 산업의 진흥 등 건축물관 -----진흥, 안전대책 등 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 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 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 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현장점검) ① 허가권자 제30조의2(현장점검) ① ----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경우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 -----실시하거나 현장점검 우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업무 업무를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 를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대행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후단 하게 할 수 있다.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 ② 허가권자는 해체 현장 주변 을 통행하는 보행자, 차량에 위 하는 자는 현장점검 결과를 국 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경우, 한시적으로 우회로 확보, 보고하여야 한다. 통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야 한다	扌.
------	----

- ③ 제1항에--------대행하는 자는 현장점검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결과를------바에 따라 여야~----
  -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 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